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1-77 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0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수정이유

장학생 자격에 통장 근속기간을 삭제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년 이상”을 “통장으로 위촉되어”로 하고, “통장의 자녀 중”을 “자의 자녀로서”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년 이상”을 “통장으로 위촉되어”로 하고, “통장의 자녀 중”을 “자의 자녀로서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<u>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u>	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<u>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(단,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)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u>	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----- <u>통장으로 위촉되어 -- 자의 자녀로서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유공장학생은</u> 지역발전, 반사회 운영, 질서, 환경개선,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	1. <u>유공장학생</u> : ----- ----- ----- -----	1. ~ 2. (현행과 같음)
2. <u>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</u>	2. <u>특기장학생</u> : -----	

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
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 난 자

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
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
로 하고,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
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
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

----- 뛰
어난 통장의 자녀

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
춘 때에도 장학생은 통장 1명에
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.
다만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
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통장
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
민간단체(이하 “국가 등”으로
한다)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
경우에는 제외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